

의안번호	제 74 호
의 결 연 월 일	2022년 10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박지현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2년 09월 일

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지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4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9월 29일
발의자 : 박지현, 이동우, 김종필,
김호경, 박진희, 변종오,
유재목

1. 제안이유

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, 환경계획의 명칭과 수립 주기에 관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(안 제3조)
- 나. 환경계획 명칭 및 수립 주기 변경(안 제11조)
-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(안 제11조, 제27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협의 :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
- 라. 조례안 예고 : 예고대상(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소음·진동·악취”를 “소음·진동·악취, 일조(日照), 인공조명, 화학물질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토양오염”을 “토양오염, 해양오염”으로, “인공조명”을 “인공조명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“(환경보전계획의 수립)”을“(환경계획의 수립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”을 “위해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라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, 환경적·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환경보전계획”을 “환경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환경보전계획”을 “환경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환경보전종합계획”을 “환경계획”으로 한다.

제27조의 제목“(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)”을“(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3. “생활환경”이라 함은 대기, 물, 폐기물, <u>소음·진동·악취</u>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.</p> <p>4. “환경오염”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, 수질오염, <u>토양오염</u>, 방사능오염, 소음·진동, 악취, 일조 방해, <u>인공조명</u>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.</p> <p>5. (생 략)</p> <p>제11조(<u>환경보전계획의 수립</u>) ① 도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<u>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</u>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소음·진동·악취, 일조(日照), 인공조명, 화학물질</u> -----.</p> <p>4. ----- ----- ----- ----- <u>토양오염, 해양오염</u> ----- ----- <u>인공조명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<u>환경계획의 수립</u>) ① ---- ----- ----- <u>위해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라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</u>하여야 하며, <u>환경적·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</u>하고 필</p>

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③ 도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과 시장·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④ 도는 지역개발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.

제27조(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) (생략)

요한 경우 이를 정비----

② ----- 환경계획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--- 환경계획-----

-----.

④ -----
----- 환경계획-----

-----.

제27조(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)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환경정책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환경”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.
2. “자연환경”이란 지하·지표(해양을 포함한다)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(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3. “생활환경”이란 대기, 물, 토양, 폐기물, 소음·진동, 악취, 일조(日照), 인공조명,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.
4. “환경오염”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, 수질오염, 토양오염, 해양오염, 방사능오염, 소음·진동, 악취, 일조 방해,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.
5. “환경훼손”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(濫獲) 및 그 서식지의 파괴, 생태계질서의 교란, 자연경관의 훼손, 표토(表土)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.
6. “환경보전”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·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.
7. “환경용량”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,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.
8. “환경기준”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.

제18조(시·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) ① 시·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(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. 이하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같다)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

당 시·도의 환경계획(이하 “시·도 환경계획” 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시·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,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삭제

④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지사에게 시·도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
⑤ 시·도지사는 시·도 환경계획을 수립·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, 대기,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1. 5.>

⑥ 시·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,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□ 시·도 환경계획 수립지침

제2장 시·도 환경계획의 기본원칙

제1절 계획수립의 대상 및 목표연도

2-1-2. (목표연도) 시·도 환경계획의 목표연도는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으로 하되,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한다(예: 2030년, 2035년).

- 시·도지사는 5년마다 목표연도 환경지표의 적정성 및 달성 여부 등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, 환경정책 및 환경기준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